

수원지방법원 2018. 5. 31 선고 2018가단51469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인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5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2. 1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은경

별지